

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하 남 시
【상 수 도 과】

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6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2015년도 정비대상 자치법규 개정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위반된 조례를 개정하여 재정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적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도사업 관리자 변경 : 상수도과장 → 상수도업무 담당국장(안 제4조)
- 나. “잉여금의 처분” 을 “이익의 처리” 로 변경(안 제16조)
- 다. 배당납부금 삭제(현행 제16조제3호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지방공기업법 제5조, 제37조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6년 4월 19일 ~ 5월 8일(20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- 나. 규제관련협의 : 의견없음

9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

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” 를 “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,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단서 중 “시장” 을 “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상수도과장” 을 “상수도업무 담당국장” 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” 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” 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도법, 기타” 를 “「수도법」 및 그 밖의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경비

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제11조에 따른 전입금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(이익의 처리)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익의 처리는 법 제37조에 따르며, 그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이익금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,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수도법”을 “「수도법」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상수도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상수도과장 정 상 원
	팀 장 직위·성명	상수도관리팀장 송 명 현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송 명 현 (790-532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	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
제1조 (수도사업의 설치)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,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급수구역)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하남시 행정구역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.	제3조(급수구역) ----- ----- . 다만, <u>하남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 (관리자의 지정) ① (생략) ②관리자는 <u>상수도과장</u> 으로 한다.	제4조(관리자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상수도업무 담당국장</u> -----.
제7조 (관리자의 책임) <u>법 제48조</u> 규정에 의한 <u>변상책</u> 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7조 (관리자의 책임) <u>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</u> ----- -----.
제11조 (일반회계부담) <u>수도법, 기타</u>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. 1. <u>지방공기업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</u> 2. ~ 3. (생략)	제11조 (일반회계부담) 「 <u>수도법</u> 」 및 그 <u>밖의</u> ----- ----- -----. 1. 「 <u>지방공기업법 시행령</u> 」 제5조에 따른 경비 2. ~ 3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제13조 (재정지원)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</u></p>	<p>제13조 (재정지원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제11조에 따른 전입금</u></p>
<p>제16조 (잉여금의 처분) <u>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이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</u></p> <p>4. <u>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.</u></p>	<p>제16조(이익의 처리) <u>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익의 처리는 법 제37조에 따르며, 그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이익금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,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.</u></p> <p><삭 제></p>
<p>제17조 (회전기금의 설치) ①<u>수도법</u>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7조(회전기금의 설치) ① 「<u>수도법</u>」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발췌서

□ 지방공기업법

제5조(지방직영기업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제37조(이익의 처리)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(前)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(補填)하여야 하고,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,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(減債)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